

事項은 條例로 規定하던 것을 教育監이 教育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정하여 告示하도록 하였으므로 現行 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과 여타 部分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報告書에 의해 같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먼저 懇談會를 開催해서 關聯 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檢討하였고, 執行部側의 자세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深度 있는 質疑 答辯을 통하여 審査를 한 結果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 報告드린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報告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和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과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3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0,000원

(도표제1호)중 “10원 갈색”을 삭제하고, 후단에 “10,000원 보라색”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關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58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關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815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5分)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建設委員會 金容一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一議員 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建設委員會所屬 金容一입니다.

本議員이 오늘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대로 報告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 條例案은 1994年 1月 11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案된 것으로 第68回 臨時會 第1次 建設委員會에서 執行部의 提案說明과